

관리단체 운영규정

제 정 2012. 2. 25

제 1 조 (근거 및 목적)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(이하 "본 협회"라 한다) 가맹단체운영 규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관리단체의 지정) 관리단체의 지정은 가맹단체운영규정 제 7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3 조 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 본 협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함을 해당 가맹단체에 즉시 통지한다.

1. 관리단체 지정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기타 주요사항

제 4 조 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는 대의원총회, 이사회, 사무국 등 가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, 본 협회가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관리단체의 임원·선수 및 기타관계자(이하 "관리단체관계자"라 한다)는 가맹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, 당해 가맹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본 협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가맹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본 협회는 가맹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가맹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.

④ 관리단체 지정 후 1년 이내에 가맹단체로서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협회에서 탈퇴케 한다.

제 5 조 (관리단체관계자의 의무 등) ① 관리단체관계자는 관리단체로서 본 협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협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 본 협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관리단체관계자는 본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및 사무공간 제공 등

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③ 본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관리단체관계자는 즉시 징계 처리한다.
- ④ 관리단체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 가맹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관리위원회의 설치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본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본 협회 직원 중에서 본 협회 회장이 지명한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가맹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- 1.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- 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- 3. 법제·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
- 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- 5. 가맹단체규약(정관)에 규정된 사업 및 가맹단체와 관련된 제반사항
- 6. 가맹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

제 8 조 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-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.
- 2. 위원회는 본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3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경기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상벌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 9 조 (준용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